



# 제 안 설 명

-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령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 고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령 군  
(기 획 예 산 과)

기획예산과장 신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예산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령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령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장애인·성차별적 용어와 “인감증명서”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 상위법령의 개정 등이 반영되지 않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법령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미망인”을 “사별한 배우자”로 하는 등 차별적 용어를 순화하는 표현으로 정비하였고,
-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미 반영한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선정대리인 업무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상 납세자보호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고령군 군세 기본 조례」에 있는 선정대리인 관련 조항을 「고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하고,
- 선정대리인 관련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 제6조에 납세자보호관 업무 중 선정대리인 업무를 추가하고,
- 「고령군 군세 기본 조례」의 선정대리인 관련 조항을 「고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40조부터 제42조로 이관하였습니다.
- 상위법령 개정으로 제41조제1항 선정대리인 신청 기준금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내용상 맞지 않는 인용 법령 및 문구를 정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령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일

기 획 예 산 과 장 신 상 진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5. . . (제 회)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령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령군수 (기획예산과장)
제출 연월일	2025. . .

**법무팀 심사필**

#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령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 . .  
제출자 : 고령군수

## 1. 개정이유

- 장애인 차별, 성 차별적 용어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장애인 차별하는 용어 정비
- 성차별적 용어 정비
-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 단순 본인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의 자치법규 정비
- 상위법령 개정과 조직개편 관련 업무조정으로 인한 조문과 용어 정비

## 3. 개정조례안 : 붙임 1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 5.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2025.3.17.~2025.4.7.(의견없음)
- 라. 성별 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마. 규제영향 분석 결과 : 해당 없음

[붙임 1]

고령군 조례 제 호

##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령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고령군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령군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신지체장애인”을 “지적장애인”으로 한다.

제2조(「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미망인으로”를 “사별한 배우자로”로 하고, 같은 조 중 “미망인”을 “사별한 배우자”으로, 같은 조 중 “미망인으로”를 “사별한 배우자로”로, 같은 조 중 “미망인인”을 “사별한 배우자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는 미망인”을 “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에게는 배우자”로 한다.

제3조(「고령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령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 제4조(「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서식 중 “장애자용”을 “장애인용”으로 한다.

#### 제5조(「고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 제6조(「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로 한다.

#### 제7조(「고령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령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78조”로 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19조”로 한다.

#### 제8조(「고령군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고령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제9조(「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고령군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생략)</p> <p>②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u>정신지체장애인</u>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p> <p>③·④ (생략)</p>	<p>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지적</u> <u>장애인</u>-----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제2조>

「고령군 국가보훈대상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보훈단체 및 참전자 단체와 군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u>미망인</u>으로 한다.</p> <p>단,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지급대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u>미망인</u> 또는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u>미망인</u>으로 하고,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u>미망인</u>인 경우 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p>	<p>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 ----- ----- ----- ----- <u>사별한 배우자로</u>----- ----- ----- ----- ----- <u>사별한 배우자</u> ----- ----- <u>사별한 배우자로</u> -- ----- <u>사별한 배우자</u> <u>자인</u> ----- -----.</p>
<p>제9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군수는 군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u>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u>는 <u>미망인</u> 복지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2. 삭 제</p> <p>3. (생 략)</p> <p>② (생 략)</p>	<p>제9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 ----- ----- ----- -- <u>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에게</u>는 배우자 ----- ----- ----- -----.</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제3조>

「고령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장애인의 소통을 위한 <u>수화</u> 및 점자교육</p> <p>6. ~ 17. (생략)</p>	<p>제5조(지원사업)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한국 수어</u> -----</p> <p>6. ~ 17. (현행과 같음)</p>

<제4조>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4. 보건소

(단위 : m<sup>2</sup>)

구분	실 명	면 적 기 준	비 고	
진료 활동	a	접수 / 수납	13.86	
		의무기록창고	10.89	
		대기공간	36.00	
		약국조제실	11.88	
		약국창고	11.88	
		일반진찰실	35.64	
		처치실	17.80	
		치과진찰실	27.54	
		치과장비실	2.70	
		치과용 암실	2.16	
		소독실	8.91	
		예방접종실	17.82	
		소아놀이실	9.90	
		수유실	7.92	
화장실	31.68			
	장애인용 화장실	4.86		

<제5조>

「고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신청) ① (생략) ②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위임장 및 본인의 <u>인감증명서</u> 2. (생략) ③ (생략)	제5조(지원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u>본인서명</u> <u>사실확인서</u>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조>

「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1항 <u>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u>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 ----- <u>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u> ----- ----- -----

<제7조>

「고령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8조-----                      -----                      -----                      -----                      ---.</p>
<p>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고령군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p>	<p>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법」 제19조-----                      -----                      -----                      -----.                      -----                      -----.</p>

<제8조>

「고령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19세</u>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고령군에 주소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2009. 06. 04. 개정>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18세</u> ----- ----- ----- ----- ----- -----

<제9조>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생략) 2. 부위원장 :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u>농업기술센터소장</u> 3. (생략) ② ~ ④ (생략)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u>농업정책과장</u>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소관 부서명 〉

고령군 기획예산과	
연 락 처	054-950-6051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고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고령군수 (기획예산과장)
제출연월일	2025. . .

**법무팀 심사필**

# 고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 . .

제출자 : 고령군수

## 1. 개정이유

- 지방세 선정대리인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선정대리인 정의(안 제2조) 및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추가(안 제6조)
  - 납세자보호관 업무 중 선정 대리인에 관한 사항 추가
- 「고령군 군세 기본 조례」(제7조~제9조)의 선정대리인 관련 조항을 삭제, 「고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제40조~제42조)로 이관
  -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안 제40조),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안 제41조), 선정 대리인 의무우대(안 제42조) 등
- 선정대리인 신청 기준 금액 상향 (제41조제1항)
  - 1천만원 → 2천만원
- 일부 미비 사항 정비 (인용 법령·조례 및 문구 정비)

## 3. 개정안 : 붙임 참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62조의2
-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2025.3.17.~2025.4.7.(의견 없음)
- 라. 성별 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마. 규제영향 분석 결과 : 해당 없음

## 고령군 조례 제 호

### 고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선정 대리인”이란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불복청구 업무를 지식기부를 통하여 대리하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경상북도지사 (이하 “지사”라 한다)의 위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선정대리인에 관한 사항

제9조 중 “제9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 「지방세기본법」 에”를 “법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 중 “ 「지방세기본법」 ”을 각각 “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4조”를 “제13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제2조제3호”를 “제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지방세행정”을 “등 지방세행정”으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1호”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26조”를 “법 제26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57조”를 “법 제57조”로 한다.

제3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7조제1항”을 “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 따른 세무부서”를 “세무부서”로, “제5항에 따른 사실”을 “사실”로 한다.

제3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0장(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장 고령군 선정 대리인 제도

제40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41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고령군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고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를 제43조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령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삭제한다.



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신설>

6. (생략)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제 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법·영에 따른다.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 5. (생략)

6.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1. ~ 5. (현행과 같음)

6. 선정대리인에 관한 사항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제 2항-----  
-----  
--.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  
-----  
-----.  
-----  
-----.

1. 법에 -----  
-----

2. 벌-----  
-----  
-----

3. ~ 5. (현행과 같음)

6. 벌 -----  
-----  
-----

7. (생략)

② (생략)

제14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  
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3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1조의 신청  
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제25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권리  
보호요청은 제2조제3호에서 규  
정한 고충민원과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  
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  
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  
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생략)

제26조(요청 대상) ① (생략)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제13조 -----  
-----  
-----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 제22조-----  
-----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  
----- 제2조제1항제4호-----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요청 대상) ① (현행과 같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 6. (생략)

제33조(업무의 범위) 군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업무 이외에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2.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3. (생략)

제34조(기한의 연장신청) ①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음)

② -----  
-----  
----- 등 지방세행정 -----  
-----  
-----  
-----.

1. ~ 6. (현행과 같음)

제33조(업무의 범위)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1항제1호-----  
-----  
-----  
-----.

1. 법 제26조-----  
-----

2. 법 제57조-----  
-----

3. (현행과 같음)

제34조(기한의 연장신청) 법 제26조제1항-----  
-----  
-----  
-----.

제36조(가산세의 감면신청) ① 「지방세기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가산세의 감면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3항에 따른 세무부서 의견 및 제5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2. (생략)

제38조(징수유예 등 신청) ①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36조(가산세의 감면신청) 법 제 57조제1항-----

제37조(가산세의 감면결정) -----

세무부서 -----

사실 -----

1. 2. (현행과 같음)

제38조(징수유예 등 신청)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0장 고령군 선정 대리인

제도

제40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41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

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

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

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

등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고령군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고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 (생략)

제43조 (현행 제40조와 같음)

<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과	
연 락 처	054-950-6051